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22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6. 5. 25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## 1. 개정이유

법제처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야외무대 운영시간 표기 수정(안 제3조제2항)
- 나. 지자체장의 면책 규정 삭제(안 제6조제2항)

## 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제1항, 「민법」 제750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
  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  - (2) 입법예고(2026. 2. 27. ~ 3. 19.) 결과 : 의견 없음
  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 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 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  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  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09:0021:00”를 “09:00~21:00”로 하고, “(68월)”을 “(6~8월)”로 하며 “09:0022:00”를 “09:00~22:00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군수은”을 “군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관리·운영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야외무대의 운영시간은 <u>09:00</u><u>21:00</u>까지이며, 하절기(68월)에는 <u>09:00</u><u>22:00</u>까지로 하며, 각종 문화·예술행사 및 길거리 생활예술공연(버스킹) 등을 위한 야외무대 사용 신청시 1회당 사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(관리·운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09:00</u>~<u>21:00</u>-----<u>(6~8월)</u>-----<u>09:00</u>~<u>22:00</u>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사용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등)</p> <p>① <u>군수</u>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<u>군수</u>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	<p>제6조(사용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등)</p> <p>① <u>군수</u>는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

# 관 계 법 령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## □ 「민법」

제750조(불법행위의 내용)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